

2013학년도 제2차
<제305차 이사회 회의록>

2013. 5. 3.

학교법인 대우학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2013학년도 제2차

〈제305차 이사회 회의록〉

| 구 분 | 이 사 | 감 사 |
|------|------|-----|
| 임원정수 | 11 인 | 2 인 |
| 재적임원 | 11 인 | 2 인 |
| 참석임원 | 10 인 | 2 인 |

1. 일 시 : 2013. 5. 3.(금) 07:30 - 09:20 (회의소집 통보일 : 2013년 4월 24일)

2. 장 소 : 포스코센터 라운지룸 (포스코 B/D 서관 19층)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

- 이사 : 추호석, 윤성복, 안재환, 문길주, 주인욱,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최 홍, 김선용
(10인)

- 감사 : 전성훈, 배흥기 (2인)

◎ 결석임원

- 이사 : 신희택 (1인)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소의영, 교무처장 박영동, 총무처장 이준섭, 병원장 유희석, 기획조정실장 탁승제, 행정부원장 김윤기, (학교)경리팀장 안영찬, (병원)경리팀장 이재권 (8인)

- **아주자동차대학** : 총장 이종화, 행정처장 이상권 (2인)

- **법인사무처** : 팀장 임홍식, 심지훈 (2인)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한 분 중 신희택 이사를 제외한 열 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안 재 환

이사

이 영 현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아주대학교 및 의료원, 아주자동차대학의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동 교무처장, 탁승제 기획조정실장, 이종화 아주자동차대학 총장이 각각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 심의안전

상임이사 이영현 : 제305차 이사회 심의 안전은 학법대우 제13-64호(2013.4.24)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의안 제1호 2012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안), 제2호 2012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제3호 2013학년도 의료원 원화리스 70억원 한도 포괄계약 승인(안), 제4호 2012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안), 제5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제6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제7호 2012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안) 등 7개의 안전을 상정하였습니다.

8. 심의내용

제 1 호 2012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안)

이 사 장 : 2012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이종화 : 2012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의 결산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계산서를 보시면 2012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10,3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입내역으로는 등록금수입이 5,788백만원으로 총수입금의 5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입 및 기부금수입이 1,197백만원, 교육부대수입이 582백만원, 교육외수입이 279백만원으로 운영수입 합계는 7,846백만원이며, 고정자산 매각수입 5백만원,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2,47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보수 2,975백만원, 관리운영비 1,982백만원, 연구학생경비 1,956백만원, 교육외비용이 48백만원으로 운영지출 합계는 6,961백만원이며, 투자와기타자산지출 600백만원, 고정자산매입지출 232백만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2,5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2.28 현재 아주자동차대학의 자산규모는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재환

이사

이영현

33,598백만원이며, 부채는 4,056백만원, 기본금은 29,5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내역을 보면 유동자금 6,160백만원, 기타유동자산 394백만원, 기타자산 5백만원, 임의기금 2,600백만원, 유형고정자산 24,394백만원, 무형고정자산이 45백만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가 4,023백만원, 고정부채가 33백만원이며,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22,259백만원, 임의적립금 2,600백만원, 운영차액 4,683백만원, 전기이월운영차액 5,485백만원, 당기운영차액 △802백만원으로, 부채와 기본금합계 33,59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계산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교비회계의 운영총수익은 7,987백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등록금수입이 5,788백만원, 전입및기부금수입 1,333만원, 교육부대수입이 582백만원, 교육외수입이 284백만원이며, 운영비용은 보수가 2,975백만원, 관리운영비 3,074백만원, 연구학생경비 2,092백만원, 교육외비용 48백만원, 기본금대체액 600백만원, 당기운영차액 △802백만원으로 비용총계 7,9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의 결산(안)에 대하여 감사님의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 사 전 성 훈 : 아주자동차대학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내부 감사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전 결산보고와 관련하여 아주자동차대학의 자금계산서 자료를 보면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이 전체 자금지출액의 24.5% 정도로 매년 계속 누적되어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높은 비율로 유지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것을 투자전환해서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주자동차대학총장 이종화 : 사실 비율로는 높게 나타나는 수치지만 금액적으로는 약 25억여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아 투자전환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해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 장 : 아주자동차대학의 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 박 상 일 : 결산(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2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비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간사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재환

이사

이영현

제 2 호 2012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이 사 장 : 2012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발의.

행정부원장 김윤기 : 부속병원의 2012학년도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익현황을 보시면 2012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의 의료수익은 2011학년도 실적대비 4.0% 증가한 381,597백만원이며, 의료비용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379,687백만원, 의료이익은 전년대비 82.9% 감소한 1,910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의료외수익은 15,571백만원, 의료외비용이 16,997백만원으로 484백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현황으로 2013.2.28 현재 아주대학교 부속병원의 총 자산규모는 225,772백만원으로서 유동자산이 59,869백만원, 고정자산이 165,903백만원, 유동부채가 84,759백만원, 고정부채 35,956백만원이고, 자본은 105,0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금현황을 설명 드리면 부속병원의 총수입은 451,028백만원이며,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 총지출은 433,185백만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17,843백만원이 차기이월되었습니다. 수입의 주요내역을 보면 의료수입이 361,076백만원, 기타의료수입이 20,521백만원, 의료외수입이 19,517백만원, 투자와기타자산수입은 5백만원, 기타고정부채수입은 9,321백만원, 차입금수입은 13,967백만원, 기본금 증가는 1,000백만원, 전기이월운영자금이 25,6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146,282백만원, 재료비는 140,002백만원, 관리비는 46,871백만원, 의료외비용은 11,051백만원, 기타투자자산지출은 10백만원, 기타고정부채상환 220백만원, 차입금상환이 12,912백만원, 유형고정자산지출이 40,349백만원, 고유목적사업비 35,488백만원이 되겠으며 차기이월운영자금은 17,84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먼저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전성훈 : 성도회계법인에서 실시한 결산 감사 결과 부속병원의 재무제표는 201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기본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각각 의료기관회계규칙과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2회계연도 업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먼저 병원 의료이익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료원에서도 앞서 보고사항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서 의료이익 악화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하여 다시 한 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의료수익 실적은 4.0%만큼 증가한 반면,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의료비용이 6.8%만큼 증가하여 의료이익이 93억원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2013학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의료수익 목표가 보다 공격적으로 과거 5년간의 평균성장률 6.0%보다 높은 8.8%의 성장을 예상한 반면 인건비와 재료비 등 의료비용은 전기 대비 또는 의료수익 대비 비교적 낮은 수준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상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 목표했던 바대로 의료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의료비용은 의료수익에 직접 연동되는 재료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정비 성격의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학년도 수익달성을 위해서는 실적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행예산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경영전략 및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진료과별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여 진료과별 의료수익 목표 달성과 성과보상이 연계되도록 하여 각 진료과가 의료수익 목표를 달성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웰빙센터는 증축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수익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웰빙센터를 특별관리하여 적극적인 수익창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익성이 개선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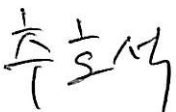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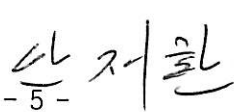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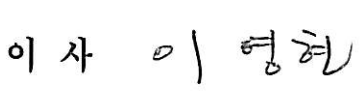
두 번째로 입원·외래시료 및 응급실 시료현황과 관련하여 과거 2년간의 시료실적을 검토하여 본 결과, 의료원 시료사업규칙에 따르면 시료시에는 항상 시료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정해진 시료금액 내에서 시료처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 시료신청은 시료사업규칙에 의거 시료신청서를 통하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승인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시료사업규칙 등에 시료 해당여부 및 감면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의료분쟁비 지급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항은 2009학년도 내부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고객상담실에서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환자가 소송이라든지 외부기관에 문제제기를 하게 될 경우 외래원무팀에서 합의 및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의료분쟁으로 인한 보상 사후에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컨대, 의료분쟁 보상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보상 원인이 된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중과실, 직무유기 등 여부와 상관없이 성과급 지급 대상금액의 3%를 차감하고, 교원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조치 정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차감 지급하는 것보다는 성과급 산정기준의 평가 항목으로 두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소송의 중요도 및 수행절차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의료소송을 전담하는 전문적인 직원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사 장 : 전성훈 감사, 배흥기 감사께서 바쁘신 시간에도 직접 점검을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께서 지적하신 내용 외에 부속병원회계 결산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주 인 육 : 의료수익이 3,816억원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4.8억으로 일반적인 상장회

<간서명란>

이사장  이사  이사 

사와 비교하면 efficacy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의료사업은 이제 점점 수익사업에서 떨어져 사회적으로 복지의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고, 통계에서도 나타나지만 순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험상 병원에서의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한 구조가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삼성병원의 경우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가 약 50% 이상을 넘어서는 수준인데 비해 그래도 아주대학교병원은 45% 남짓 되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분이 전년도와 대비해서 조금씩이나마 슬슬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안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아주대병원은 병상 수 규모 및 외래환자 대비 의료수익의 볼륨으로만 보면 괜찮은 수준으로 보여지나 결국 병원의 질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병원의 질은 신환이나 초진환자 수, 수술건수, 사망률 등으로 결정되는데, 신환·초진환자 수를 살펴보면 증가하지 못하고 답보하는 수준이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신환·초진환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변의 개인 병·의원과 연관관계를 가져서 신환환자를 흡수하고 회전율을 늘림으로써 병원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진료협력센터를 활성화하여 신환·초진환자를 늘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 사 배 흥 기 : 저희들이 내부감사를 하면서 대우학원 산하기관 중 아주대병원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주대학교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주인욱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건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주변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동탄 성심병원의 신설로 인해 환자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2013학년도 예산에서 의료수익의 실적대비 증가율을 과거 평균대비 증가율인 7.3% 보다 높은 8.8%로 설정한 반면, 의료비용의 예산은 실적대비 증가율인 6.8% 보다 낮은 5.0%의 비용 증가율로 설정하는 등 수익은 높게, 비용은 낮게 설정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달성 정도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아직 초기이기는 합니지만 웰빙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큰 투자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사 장 : 의료원에서 문제점이나 관련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겠지만, 주인욱 이사님 배흥기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부연 설명하시거나 추가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 원 장 유 희 석 : 이사님이나 감사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개선시켜야 할 부분이며, 특히 주인욱 이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공감하는 내용으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수익에 있어 외래환자가 늘어야 검사·시술·수술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입원도 증가되며 그 환자들이 다시 외래로 오는 그런 순환구조를 갖는데, 이런 의미에서 초진·신환의 외래환자 증가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런 외래환자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처음 내원하는 환자가 당일 외래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외래진료가 많이 밀리는 몇몇 스타 교수들의 경우 해당 교수를 설득해서 좀 더 진료시간을 늘려 더 많은 외래환자를 수용할 수 있

<간서명란>

이사장

유희석

이사

신재환

이사

이영현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문 의사 분들을 중심으로 주변 개원의들과의 진료협력시스템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좀 더 전문적인 진료협력센터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89% 정도의 병상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특수병동을 일반병실화 한다든지, 수술환자의 경우 수술당일 입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능한 한 재원일수를 줄이는 부분들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의무부총장 소의영 : 감사님께서 의료수익이 예년에 비해 과하게 설정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작년엔 특별한 외부요인이 없었다면 6% 정도 수익증가율을 달성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일단 목표를 높게 잡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고, 감사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익 대비 지출에 대한 전략을 다시 짜서 분기별로 점검해서 달성된 수익에 맞춰서 지출되는 모든 항목을 조절하여 수익과 지출에 대한 대응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 윤 성 복 : 손익계산서에서 어린이집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수익은 8.8억원인데 비해 비용은 18.4억원 정도로 9.5억원 정도 결손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책으로 보육비는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같이 운영수지가 악화되는 이유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무부총장 소의영 : 사학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아 일반적인 타 어린이집과는 달리 실제로 국가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건비나 관리비는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200명 정도의 어린이가 해당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주대병원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해 외지에서 오는 직원들이 많고 젊은 간호사들이 많은 편이라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대기인원만 100명이 넘습니다. 교직원들에게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은 큰 복지혜택으로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관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다른 비용을 절약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 윤 성 복 :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보육교사 인건비 이외에도 정부가 만 5세까지는 바우처를 통해 보육비를 대폭 지원하고 있고 그러한 정부보조금을 기관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여 정부지원 보육비가 어린이집 운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무부총장 소의영 : 이사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수지 개선을 위해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여 자체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 장 : 의료원에서는 아마 교직원 복지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윤성복 이사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원(안)에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최호석

이사

신재환

이사

이영현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2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3 호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의료원 원화리스 70억원 한도 포괄계약 승인(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의료원 원화리스 70억원 한도 포괄계약 승인(안) 발의.

기조실장 탁승제 : 의료원 2013학년도 예산관련 의료장비 등 의료관련 필수장비 도입자금을 원화리스 70억원으로 예산 편성함에 따라 해당 원화리스를 다음과 같이 포괄계약 하고자 합니다. 리스사는 하나캐피탈(주)로서 금리는 기준금리에 0.76%를 더한 내용으로 1년 단위 변동금리이며, 70억원의 리스 도입대상 장비는 주로 장비 단종, 노후 교체 및 임상각과의 필수 사유로 구입이 요구되는 장비입니다. 포괄계약의 주요내용 및 의료기기 장비목록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주 인 옥 : 리스 활용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3학년도 아주대학교 의료원 원화리스 70억원 한도 포괄계약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원화리스 70억원 한도 포괄계약 승인 내용

| 구 분 | 계 약 조 건 | 비 고 |
|--------|-------------------------------|------------|
| 기 체 처 |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 |
| 계약금액 | 70억원 | |
| 리스기간 | 5년 | |
| 납부방법 | 3개월 후불 | |
| 금 리 | 기준금리(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AA-) + 0.76% | 1년 단위 변동금리 |
| 리스형태 | 금융리스 | |
| 담보제공 | 무담보 신용 | |
| 종료후 처리 | 무상양도 | |

< 간 서 명 란 >

이사장

최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제 4 호 2012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안)

이 사 장 : 2012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안) 발의.

총무처장 이준섭 : 2012학년도 아주대학교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계산서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24,268백만원으로 먼저 수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등록금 수입은 123,458백만원, 전입금 수입은 44,531백만원, 기부금수입 4,317백만원, 국고보조금수입 16,874백만원, 교육부대수입은 10,862백만원, 교육외수입은 3,468백만원, 투자와기타자산수입은 6,665백만원, 고정부채입금수입이 714백만원, 2011학년도 이월자금인 미사용전기이월 자금은 13,37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의 세부내역을 보면 교원과 직원, 조교, 임시직원, 강사료 등 보수가 101,896백만원, 시설 및 일반관리비와 운영비 등의 관리운영비는 25,038백만원, 연구비 5,864백만원, 학생경비는 53,352백만원, 교육외비용은 2,312백만원이며, 투자와 기타자산지출은 9,958백만원, 고정자산매입비가 8,899백만원이고 고정부채상환지출이 1,047백만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이 15,9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2.28 현재 유동자금은 65,244백만원, 기타유동자산은 15,477백만원, 투자자산 115백만원, 기타자산 4,259백만원, 임의기금 44,841백만원, 유형고정자산 162,049백만원, 무형고정자산 52백만원으로서 총자산규모는 전년대비 4,070백만원 증가한 292,037백만원입니다. 부채의 세부항목으로는 유동부채가 64,819백만원, 장기차입금은 11,482백만원, 기타고정부채는 1,053백만원으로서 부채 총계는 전년대비 2,756백만원 증가한 77,35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금에서는 출연기본금이 92,499백만원, 임의적립금이 47,406백만원, 운영차액이 74,778백만원으로 기본금의 합계는 214,683백만원으로서, 부채와 기본금 합계는 292,03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학년도 운영계산서를 설명 드리면 운영수익과 운영비용 총계는 각각 전년대비 3,877백만원 증가한 203,905백만원으로, 운영비용 합계 202,591백만원, 기본금대체액 8,937백만원, 운영차액 대체액 △6,009백만원, 당기운영차액 △1,6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안)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전 성 훈 : 우선 아주대학교 교비회계와 관련하여 성도회계법인에서 실시한 결산감사 결과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무제표는 201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내역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재환

이사

이영현

이와는 별도로 업무감사를 실시하여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였는데, 먼저 교직원 징계의 적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 및 직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거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작년 내부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공공정책대학원 공금횡령 건과 관련해서도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상권 청구의 적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비 관리규칙에 따르면 연구목적이나 연구계약 내용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내 한 교수의 연구비 지급과 관련 연구의뢰처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아주대학교가 손해액 99백만원을 배상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학교 측은 해당 교수로부터 연구 관련 손해를 환수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상권 청구를 통한 적절한 환수가 요구되며, 관련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해당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의 명백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 및 관리책임의 주체인 아주대학교도 책임이 있는 바 아주대학교와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의 분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해야한다는 법률자문 의견이 있어 향후 연구비 관리규칙에서 환수에 대한 적절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연구기관 이외 소속 연구원 현황 및 임용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원래 연구기관의 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용하며, 직원은 직원인사규정에 의해 이사장의 승인 하에 총무처에서 일괄 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기관 이외의 부서에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임용되는 연구원은 실질적인 연구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총무처에서 계약직 채용절차에 준하여 채용하여야 하나,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처에서 채용 및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5년간 연구기관 이외 소속 연구원 채용 인원은 최근 들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연구기관 이외 소속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계약직원에 해당되므로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총무처가 계약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채용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출장절차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복무규칙에 따르면 교직원 출장시 출장명령부에 의한 허가를 받고 출발하고, 귀임시 복명서를 3일 이내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2학년도에 교직원이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56%에 달했고, 복명서 제출기한도 교직원 복무규칙에는 3일로 되어 있으나 국내 여비교통비 지급기준에는 7일로 되어 있어 제도 자체도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교통비 지급기준에 의하면 출장 신청서나 국내여비 출장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여비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비 교통비를 지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출장과 관련해서 규칙에 따라 출장 신청서나 국내여비 출장보고서가 첨부되어 명확한 집행이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 석

이사장 이원

이사 이영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여 해당 규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휴강, 보강 및 타대학 출강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도 수차례 내부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휴·보강시 사전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나 사후에 승인 신청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휴강하는 경우 보강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강이 인정되긴 하나 대강의 범주가 모호하여 '기타' 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대학 출강시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출강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에 따라 출강허가신청서 상 출강사유가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휴강 및 보강의 사전 승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지 및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강의 사례 중 기타의 범주를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타대학 출강은 강의 횟수의 제한이나 교내 강의평가 점수, 강의청탁서 증빙 첨부 등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제한되고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총괄적으로는 감사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교직원 징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공공정책대학원 횡령 건은 비록 절차가 지연되긴 하였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금횡령을 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하였고, 해당 부서계좌를 없애면서 관련 근거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관리 감독과 관련한 해당 교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사(총장) 안재환 :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횡령 건은 책임운영부서인 특수대학원의 학사행정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후에 자체감사를 지시하여 실시하였고, 특히 특수대학원의 비학위과정 학사관리 부분에서 취약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정책대학원을 포함한 특수대학원 전체에 대해 자체감사를 모두 마무리 짓고 이후 징계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다음으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하여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서 논의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상대로 한 연구비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가 99백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판결남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해당교수에 대해 얼마를 구상할지를 논의하였고, 학교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분담비율을 약 3:7 또는 4:6 (30~40%) 비율 정도로 회의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사 박상일 : 그렇게 정한 비율에 대해 해당 교수는 자기 분담부분을 수공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해당 교수는 가능하면 5:5 정도를 제시하였는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학교 측 과실비율이 40%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 그 비율은 총장님께 결재를 올려 최종 결정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산재환** 이사 **이영현**

이 사 윤성복 : 그렇게 되면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교직원 징계와도 연계되는 문제로 학교 측 과실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지 않습니까? 징계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라면 학교가 책임지는 비율 자체도 재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비를 지급받은 교수만 문제 되는 것이라면 해당 교수의 징계부분도 같이 연계 되어야 할 것이고, 학교 당국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 그 관리책임자도 해당 과실에 대한 징계가 같이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손해배상금 지급이나 구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부분에 대한 징계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관련 과실비율도 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의적으로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보다는 학교 당국에 대한 책임여부를 면밀히 따져 관련 사항에 대해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관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원고인 (주)윤익씨앤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 소송진행을 개인인 교수께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학교가 부담할 비율을 30~40% 정도로 본 것입니다. 학교가 연구비 관리에 대해 특별히 과실을 범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원래 학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을 개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 학교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 윤성복 : 소송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소송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 박상일 :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학교의 관리책임 부분은 분명히 나올 수 있고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학교가 30~40%의 책임을 미리 인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책임을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의 소송을 교수 개인의 사비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교에서 일정부분 변상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 교수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학교가 소송을 당해 책임을 인정받고 소송비용이 들어간 것이라면 사실은 오히려 그 소송비용까지도 변상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학교 측이 승소했으면 모르지만 패소해서 결국은 해당 교수 때문에 학교가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간 것이고 어차피 그 교수에게 구상하여야 할 비용을 먼저 소송비용으로 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비용을 인정해서 30%든 40%든 빼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학교의 관리책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지만 그것이 몇 퍼센트가 되었든 학교가 자발적으로 빼준다는 것은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윤성복 이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책임으로 인해 학교에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면 거기에 따른 책임문제도 따져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알겠습니다.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원 관리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 연구기관 이외 부서에서 소속되는 연구원은 총무처에서 채용에서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절차 및 집행에 관한 지적사항도 돌아가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장 안재환

이사장 이영현

이 사 신 상 협 : 이 부분에 대해 참고 말씀 드리면, 사실 학교마다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시스템은 전산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출장자 본인이 처리기한까지 출장처리에 대한 입력을 하고, 입력한 것에 대해서만 부서장이 승인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신청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희대학교의 경우 그렇게 전산화시켰더니 관련문제가 일순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참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처장 박영동 : 다음은 휴·보강 및 타대학 출강관리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아무래도 교수님들 중에서 학회나 세미나에 참석할 때 시스템에 올리지 않고 있다가 대신 동료 교수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휴·보강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토록 하면서 수업시행 여부에 대한 논란까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사(총장) 안재환 : 타대학 출강 관리와 관련해서 개선방안으로 좋은 지적이 있으셨는데, 타대학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강의청탁서 등과 같은 관련서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증빙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 사 전 성 훈 : 업무감사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아주대학교 교비회계에 있어 사실은 아까 총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특수대학원의 경우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실제로 예산 전체를 다 묶어서 보니까 문제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학부,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각 구성단위별로 나누어서 분리 회계를 하여 결산을 따로 한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사(총장) 안재환 : 특수대학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운영부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상당한 자율권을 주고 있는데 반해 자체감사가 비교적 약해 업무에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팀을 상시적으로 두고 감사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업무에 있어 더욱 긴장하게 될 텐데 별도의 감사팀이 없고 사후에 기획처에서 교내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운영 측면에서 시행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사 윤 성 복 :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특수대학원별로 나름대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특수대학원으로부터 관리비 형태로 수입 대비 25~30% 정도의 간접경비가 들어오는데 관련 자금이 적정하게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구성단위별로 재무제표에 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전성훈 감사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총장님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업무적으로 더욱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 장 :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이사님과 감사님의 지적사항에 대해 학교에서는 성실히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안)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동의합니다.

<간서명 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

이 사 최 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2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5 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발의.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의 임기가 2013년 5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구성은 현행과 같이 학교의 장 추천자 중 4인과 이사 중 3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우선 학교의 장 추천자에 대한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회의자료 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의 장께서 추천하신 해당 추천인 4인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혹시 총장께서 해당 추천인에 대해 보충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총장) 안재환 : 교원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원 중에서 한 분을 추천하였고, 나머지 세 분은 아주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신 연륜 있는 분으로 계열은 안배하여 추천하였습니다.

(학교의 장 추천인 4인인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용 교수, 의학과 김영수 교수, 생명과학과 최홍근 교수, 경영학과 김광윤 교수에 대해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로 선임·의결하다.)

이 사 장 : 지난 해 학교법인 이사 중 징계위원으로 박승철 이사, 문길주 이사, 박상일 이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징계위원으로 문길주 이사, 박상일 이사에 한 번 더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의료원에 많은 경륜과 지식을 갖고 계시는 주인욱 이사에 퇴임하신 박승철 이사님 자리를 대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사 문길주, 박상일, 주인욱은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 선임을 승낙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심의하여 참석이사 10

<간서명란>

이사장

추 호석

이사장 안재환

이사 이영희

인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 문길주, 이사 박상일, 이사 주인욱,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용, 의학과 교수 김영수, 생명과학과 교수 최홍근, 경영학과 교수 김광윤 등 7인을 임기 1년 (2013.6.1 ~ 2014.5.31)의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의결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6 호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안) 발의.

아주대학교 보직 중 2013.2.28자로 임기 만료되어 현재 공석 상태인 자연과학대학장의 후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학교 장의 제청을 받아 자연과학대학장에 수학과 이형천 교수를 임명하고자 동의 요청 드립니다.

(참석임원 첨부된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총장) 안재환 : 수학과 이형천 교수는 전임 자연과학대학장으로 당시 학장직을 원만히 수행하였으며, 업무의 연속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학장직 연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 윤 성 복 : 임기만료일이 2015.5.5자로 되어 있는데, 1학기든 2학기든 학기 초에 다음 보직자의 임기가 개시될 수 있도록 임기 종료날짜를 맞추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사(총장) 안재환 : 직제규정에 따라 보직교원의 임기가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 학기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 학기 도중에 보직교원이 바뀌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모든 보직교원들이 학기 초에 임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그러질 못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장의 경우 오히려 학기 시작하기 한 달 전에 미리 임명하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사 윤 성 복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을 심의하여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2013.5.6자로 임명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재환

이사

이영현

이영현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 내용

| 보 직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임명일자 |
|---------|-----|-----|-------|-----------|
| 자연과학대학장 | 수학과 | 교 수 | 이 형 천 | 2013.5.6. |

제 7 호 2012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안)

이 사 장 : 2012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먼저 결산(안)의 자금계산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27,748백만원으로서 수입의 내역을 보면 부속병원전입금 수입이 5,647백만원, 일반기부금 수입이 5백만원, 예금이자수입이 2,386백만원, 임대료·관리비수입이 1,785백만원, 잡수입 등 7백만원으로 운영수입은 9,829백만원이며, 투자와기타자산수입이 34백만원, 토지매각대 7,288백만원, 건물매각대 4,712백만원, 임대보증금수입 175백만원으로 자산 및 부채수입이 12,175백만원,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5,70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임직원보수 557백만원, 시설관리비 121백만원, 일반관리비 295백만원, 운영비 321백만원, 지급이자 40백만원, 전출금 6,542백만원으로 운영지출은 7,876백만원이며, 투자와기타자산지출이 13,052백만원, 자산 및 부채지출이 314백만원, 2012회계연도말 차기로 이월되는 자금은 6,50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2.28 현재 자산규모는 331,542백만원이며, 부채는 3,752백만원, 기본금총액은 327,7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세부내역을 보면 유동자금 6,606백만원, 기타유동자산 375백만원, 설치학교 173,201백만원, 부속병원투자 79,859백만원, 투자유가증권 100백만원, 기타투자자산 23백만원, 유형고정자산 14,238백만원, 원금보존 기타기금 56,578백만원, 임의퇴직기금 306백만원, 기타자산 등이 254백만원으로 자산총계는 331,542백만원이며, 부채의 세부항목으로 유동부채는 476백만원, 장기차입금이 1,333백만원, 기타고정부채 1,943백만원으로 부채총액은 3,752백만원이며, 출연기본금은 248,518백만원, 운영차액이 22,388백만원, 원금보존기타적립금 56,578백만원, 임의퇴직적립금 306백만원 등 기본금은 327,789백만원으로 부채와 기본금 합계는 331,54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계산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법인회계의 운영비용 및 운영수익 총계는 23,708백만원으로 운영비용 합계 11,094백만원, 기본금대체액 12,049백만원, 당기운영차액 5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법인회계 결산(안)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신 위환

이사

이영현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전 성 훈 :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학교법인은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검토한 바,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수익금의 학교전출 의무기준에 따른 2013년 4월 1일 현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및 전출 실적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법정수익률인 3.5% 이상인 5.4%의 수익률을 나타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 법정부담률 또한 법정전출 의무비율인 80% 이상을 충족하였습니다. 또한 성도회계법인의 결산감사 의견은 전체적으로 법인 회계의 2013.2.28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2012학년도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 내용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 최 홍 : 원(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10인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2학년도 법인회계 결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 장 : 제305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최 홍 : 이사장님과 안재환 이사님 그리고 이영현 이사님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석임원 10인 전원이 최 홍 이사의 의견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안재환, 이사 이영현을 참석임원의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 호 석

이사

안 재 환

이사

이 영 현

10. 폐회선언

이 사 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05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9시 2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2013년 5 월 3 일

| | | |
|-----|-------|-------|
| 이사장 | 추 호 석 | 추 호 석 |
| 이사 | 윤 성 복 | 윤 성 복 |
| 이사 | 안 재 환 | 안 재 환 |
| 이사 | 문 길 주 | 문 길 주 |
| 이사 | 주 인 욱 | 주 인 욱 |
| 이사 | 박 상 일 | 박 상 일 |
| 이사 | 신 상 협 | 신 상 협 |
| 이사 | 이 영 현 | 이 영 현 |
| 이사 | 최 홍 | 최 홍 |
| 이사 | 김 선 용 | 김 선 용 |
| 감사 | 전 성 훈 | 전 성 훈 |
| 감사 | 배 홍 기 | 배 홍 기 |